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12.10(화)14:00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2월 0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04일

3. 제안 이유

-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,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도의 책무(안 제3조)

- 태양광산업 육성 방안 강구,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장려

나.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
라. 사업의 시행 및 투자권고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마. 기업 등에 대한 지원(안 제9조)

- 솔라 그린시티 조성,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
건립, 설비보급 사업 등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’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·이용·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법 적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함.

- 다만, 안 제4조 ‘태양광산업육성계획’을 비용추계서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, 안 제5조 ‘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’를 ‘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’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태양광산업 분야 전문가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- 또한,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총 9,5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여기에 도비도 657억이 필요한데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